

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

[시행 2019. 5. 16.] [서울특별시조례 제7194호, 2019. 5. 16., 일부개정]

서울특별시 (도로관리과), 02-2133-8186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「도로법」 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1995. 12. 30., 2010. 1. 7., 2010. 4. 22., 2014. 7. 17.>

제2조 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0. 1. 7.>

1. "도로복구공사"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케부분 또는 간접손케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.
2. "직접손케부분"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.
3. "간접손케부분"이란 직접 망가진 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케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.

제3조 (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「도로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(이하 "원인자부담금"이라 한다)을 징수한다. <개정 2010. 1. 7., 2014. 7. 17.>

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케부분 및 간접손케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. 다만,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케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케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0. 1. 7., 2010. 4. 22., 2010. 7. 15.>

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기울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,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,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,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. <개정 2010. 1. 7., 2010. 4. 22., 2014. 7. 17., 2018. 1. 4.>

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5. 16.>

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. <신설 2003. 6. 16., 2010. 1. 7.>

제4조(원인자부담금 등의 강제징수)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,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. <개정 2014. 7. 17.>

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91조를 준용한다. <개정 2010. 1. 7., 2011. 7. 28.>

[본조신설 2003. 6. 16.]

[제목개정 2015. 10. 8.]

제5조(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) ① 시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. <개정 1998. 3. 10., 2010. 1. 7., 2010. 4. 22.>

1.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2.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손케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. 다만,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
3. 그 밖에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. <개정 1998. 3. 10., 2010. 1. 7., 2010. 4. 22.>

③ 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. <개정 1998. 3. 10., 2010. 1. 7., 2010. 4. 22.>

제6조(권한의 위임) 제3조,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·환급 및 추가 징수에 관한 시장의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03. 6. 16., 2010. 1. 7., 2010. 4. 22., 2015. 10. 8.>

제7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▣ 부칙 < 제7194호, 2019. 5. 16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별표 1> <개정 2019.5.16.>

도로복구공사굴착표준최적기울기 및 복구비용산출방법(제3조제3항 관련)

1. 표준 최적기울기 - 1 : 0.1 (기존 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간주함)
2. 최소굴착면적, 최소굴착폭, 간접손계영향구간 및 복구비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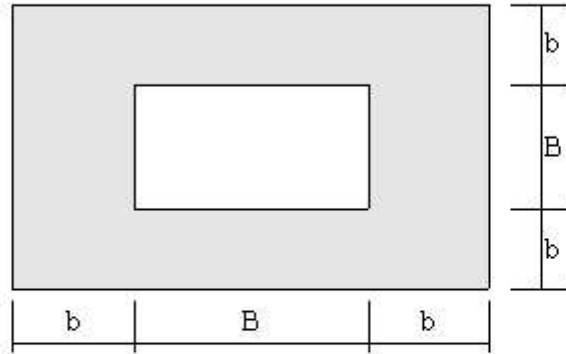
구분	차도 (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)	보도	
		블록 및 화강석류	투수성아스콘, 아스팔트, 콘크리트류
최소굴착면적	1.0m×1.0m	1.2m×1.2m	1.2m×1.2m
최소굴착폭	1.0m	1.2m	1.2m
간접손계영향구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최소굴착 및 소규모굴착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.25m 구간 •굴착깊이가 2.5m이던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.3m 구간 (굴착시 절단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방 0.6m까지의 범위) •굴착깊이가 2.5m이상 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1/5까지 범위 (굴착시 파입, 토류벽 등의 시설치 또는 절단기 미사용시는 0.3m씩 추가 가산) •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또는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 아스팔트포장구간에 한하여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.3m구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.4m구간 •노면도면계 인접부분에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굴착 0.25㎡ (이 경우 굴착면적은 1m × 1m로 계산한다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. •단,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노면도면계 인접부 굴착의 경우에는 블록 및 타일류의 경우에 준한다.
복구비	직접	직접손계부분 복구비	직접손계부분 복구비
	간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아스팔트포장도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손계영향구간의 중층 및 표층시공비 -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덧씌우기(두께 5cm) 비용 •콘크리트포장도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손계영향구간의 콘크리트 표층시공비 -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 5cm 비용 •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도로(기존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손계영향구간의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표층 시공비 -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 5cm 비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블록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(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%를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) •화강석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손계영향구간의 콘크리트기초 시공비 -굴착구간 및 손계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
	합계	도로복구금액 (직접복구 + 간접복구금액) × *요율	

*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37조(건설기술용역대가)의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(전면 책임감리비 요율)에 따른 요율 범위 내에서 정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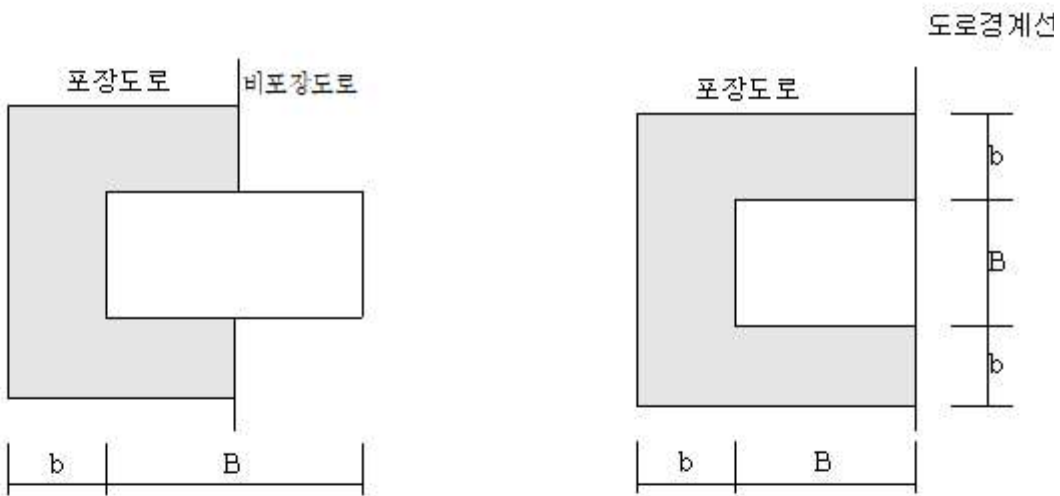
3. 굴착폭(B), 간접손계영향구간(b) 및 간접복구단면

가. 굴착폭(B) 및 간접손계영향구간(b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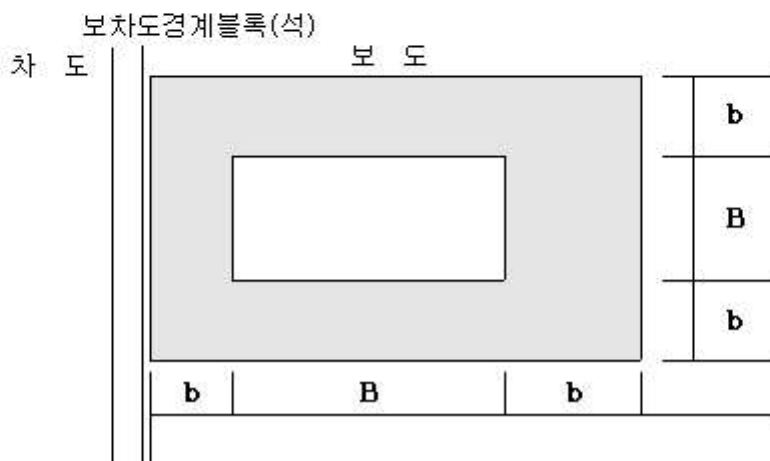
1) 표준 평면도



2)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및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 평면도 (아스팔트, 콘크리트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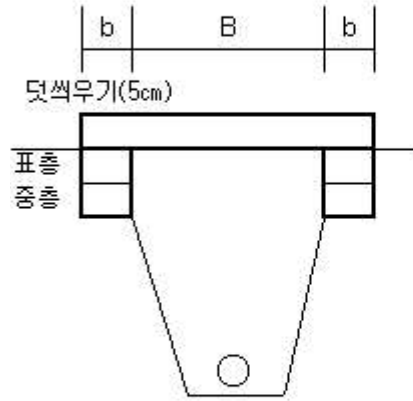
3) 보차도경계선 인접부 굴착 평면도 (보도구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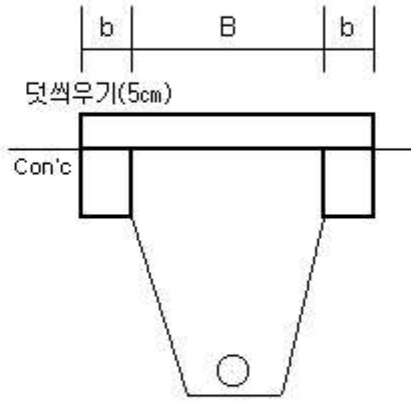
나. 간접복구단면

1)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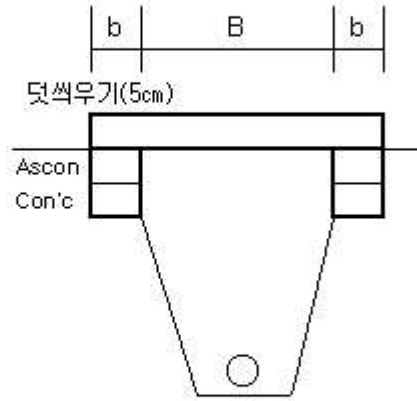
① 아스팔트



② 콘크리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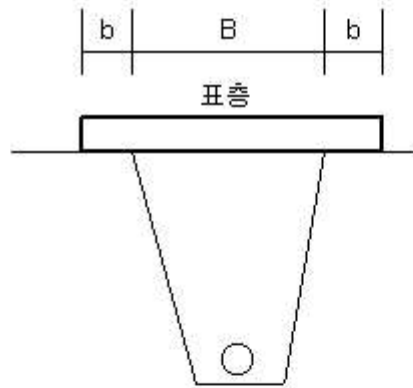


③ 아스팔트덧씌우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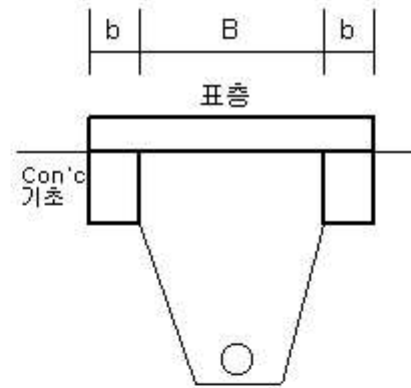


2) 보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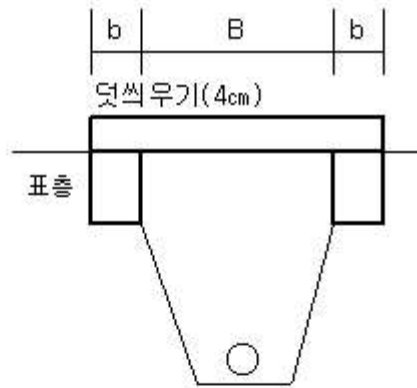
① 블록류



② 화강석류



③ 투수성아스콘,아스팔트,콘크리트류



4. 간접복구비 미부와 대상

- ① 사업시행자가 굴착구간의 도로폭 전체를 복구하는 경우
- ② 보도구간에서 굴착폭 외의 잔여 보도폭 합계가 1m미만일 경우
이 경우 보도폭 전체를 복구하여야 하며,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복구를 의뢰할 때에는 직접손계부분 복구비 및 직접손계부분을 제외한 잔여구간의 표층 시공비를 직접복구비용으로 징수한다.
- ③ 차도구간에서 사업시행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굴착구간의 간접손계영향구간을 초과하여 차로단위로 평삭 정비하는 경우
- ④ 2인 이상 사업시행자가 동일구간에서 동시 병행굴착시 간접손계영향구간이 중첩되는 경우 감소부분
- ⑤ 사업시행자가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·개축·신설공사 계획에 따라 병행시행을 위하여 굴착하는 경우
-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또는 개량을 위해서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
- ⑦ 보차도경계블록(석), 도로경계블록(석), 측구,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손계에 대하여 복구하는 경우
다만,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복구를 의뢰할 경우에는 당해년도 시설단가에 의하여 직접복구비를 산정 부과한다.

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(제3조제3항 관련)

종 별	부 호	적 용 단 면	적 용 범 위	
아스팔트 포장도로	A - 1	표층 : 5cm 중층 : 15cm 보조기층 : 20cm 기층 : 40cm	폭 20미터이상 도로	
	A - 2	표층 : 5cm 중층 : 7.5cm 보조기층 : 20cm 기층 : 30cm	폭 20미터미만 도로	
콘크리트 포장도로	C - 1	표층 : 20cm 보조기층 : 20cm	폭 6m이상 도로	
	C - 2	표층 : 15cm 보조기층 : 15cm	폭 6m미만 도로	
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	CA - 1	표층(아스콘) : 5cm 표층(콘크리트) : 20cm 보조기층 : 20cm	폭 6m이상	기존 노면이 콘크리트포장인 경우
	CA - 2	표층(아스콘) : 5cm 표층(콘크리트) : 15cm 보조기층 : 15cm	폭 6m미만 도로	
보 도로	일반보도블록	표층 : 6cm 모래 : 4cm 보조기층 : 10cm	단,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.	
	소형고압블록	표층 : 6cm 모래 : 4cm 보조기층 : 10cm		
	화강석	표층 : 3~5cm 물탈(1:3) : 4cm 콘크리트기초 : 10cm 보조기층 : 10cm		
	투수성아스콘	투수성아스콘 표층 : 4cm 기층 : 10cm 모래 : 5cm		
	기타	기존보도의 단면에 준한다.		
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	블록 포장	보도블록표층 : 8cm 모래 : 3cm 콘크리트기초 : 10cm 보조기층 : 15cm	단, 기울기가 1/100이상 구간은 모래(3cm) 대신 불임모르터(4cm) 적용	
	아스팔트포장	표층(아스콘) : 5cm 기층(콘크리트) : 15cm	기층은 와이어 매쉬 포함 기층과 표층 사이 텍코트	
	콘크리트포장	표층(콘크리트) : 15cm 기층(골재) : 15cm	기층과 표층 사이 그라우트(접착식) 및 분리막(비접착식) 적용	
	기타	기존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의 단면에 준한다		
비 포장 도로		서울특별시가 유지관리하는 비포장 도로		
기타 도로 시설물	기존 시설대로 원상복구			

비고 : ①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은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,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는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

② 기층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의한다.

[별표 3] <개정 2014.5.14>

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(조례 제3조제3항 관련)

1. 도로굴착공사 시에는 시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발생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.
2. 굴착된 부분에 대하여는 모래로 되메우기를 한 후 물다짐을 하여야 한다.
다만, 굴착된 토사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다. 이 경우 롤러, 콤팩터, 소형램머 등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층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고, 각 층(200mm이하)마다 KS F 2312의 C, D, E 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%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.
※ “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(토목편) 4-8 굴착 및 복구공사” 참고
3. 포장도로 굴착 시에는 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포장 층을 직선으로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고, 복구 시에는 신, 구 포장의 접합부분을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한다.
4. 보도상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함을 원칙으로 한다.
다만,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행 공간 확보 등 안전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계굴착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계굴착으로 인한 굴착부분 이외의 보도블록 파손이나 침하 등 시설물 손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, 손괴발생 시 굴착 원인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비용을 도로관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.
5.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에는 착공 전에 구간별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.
6. 도심지 내의 도로,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7. 도로굴착공사 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매설물 관리부서와 협의, 매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고, 손괴시에는 해당 소유자나 관리자의 확인하에 원상복구하여야 한다.
8.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,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(국토교통부), 「서울특별시 도로굴착·복구업무 처리규칙」,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(토목편),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등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.